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0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정청래·권인숙·송재호

오기형 • 오영환 • 이성만

이수진(비) · 이용빈 · 전혜숙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원 명의 인건비 편취가 문제가 되었으나 인건비 편취가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음.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비위행위가 '배임, 절도,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공무원(5년)과 달리 여전히 3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역시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4).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이"를 "3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를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66條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第66條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 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삭 제>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삭 제>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삭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